



담배연기없는 교도소(Smoke-Free Prison)

거제대우병원 산업의학과 / 박정래

“흡연행위는 교도소 내에서는 아주 일반적인 것이다. 수감자들의 대략 80%와 교도소 직원들의 40%가 흡연자에 해당하는데, 이는 서구 지역의 일반적인 흡연율인 15%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치이다. 교도소에 만연한 흡연행위는 공공기관 대상의 금연정책에 대한 훌륭한 표적이 될 수 있으나, 수감생활의 권태로움과 일상생활을 구속하는 제반 조치 등은 수감자들이 담배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하는 큰 장애요인이다.”

“오늘날 간접흡연의 노출이 초래하는 건강위해에 대해서는 이미 너무나도 많은 사실들에게 알려져 있다. 흡연자들과 같은 감방에서 지내야만 하는 20%의 비흡연 수감자들과 교도소 내의 담배연기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비흡연 직원들의 건강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흡연행위는 알려져 있는 건강상 위해에도 불구하고 아직 일반적인 공중사회(the

general community)에서도 완전히 금지된 상태가 아니다. 죄수들은 처벌을 받기 위해 교도소로 간 것이지만 간접흡연의 피해라는 비정상적인 처벌이 더해져서는 안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수감자들에게 금연정책의 위반을 이유로 추가적인 처벌을 더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공공기관과 지역사회 내에서도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금연정책을 교도소 내의 수감생활에 적용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일까?

다른 한편으로 일반사회나 직장에 비해 보다 열악한 수감자들의 안전보건환경을 고려할 때, 교도소 내의 간접흡연 노출피해와 금연정책의 필요를 역설하는 것이 수감자들의 건강문제에 대한 관심과 논란을 부각시키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지 않을까?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질문들과 관련하여 수감자들의 간접흡연 피해와 관련한 논란들, 수감생활에 따르는 산업보건차원의 책

임문제, 수감생활의 고유한 현실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금연정책 실행상의 실제적인 어려움 등을 다루고자 한다.

1. 수감자들의 흡연 유병률

수감자들과 교도소 직원들의 흡연 유병률에 대한 역학적인 연구 자료는 드물다.

대체적으로 교도소 집단의 흡연율은 일반 인구집단보다 매우 높은 흡연율을 보이고 있는데, 그 차이는 일반 남성을 기준으로 할 때 대략 26%정도에 해당한다. 이 차이는 경제적으로 열악한 수감자층에서 더욱 크게 벌어지는데 스코틀랜드의 경우, 빈민촌 지역에 위치한 교도소에서의 흡연율의 경우 일반 남성보다 56%정도나 높게 나타나고 있다.

유럽지역 수감자들의 흡연율은 64-88%로 보고되어 있는데(2007), 이는 일반 인구에 비해 최소 2배-3배에 이르는 수치이다. 물론 이는 수감자들의 대부분이 남성이라는 (유럽의 경우 95%가 남성) 사실을 감안하여야 한다. 이를 감안할 때 남성 수감자들의 흡연율이 일반 남성인구의 1.5-2.0배인 것으로 간주함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2003년의 연구에서는 수감자들의 88%가 흡연자로 나타났는데, 이들의 하루 평균 흡연

량이 23.3 개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웨일즈에서의 연구에서는 형을 선고받은 남성 수감자들의 78%가 흡연자이며, 구속 상태에 있는 수감자들의 85%가 흡연자인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2007년 리투아니아에서의 남성 수감자 9,634명의 흡연율 조사에서는 85.3%가 흡연자였으며, 같은 시기에 영국 런던의 조사에서는 78%가 흡연자로 나타났다. 2006년 프랑스 리옹의 조사에서는 니코틴 의존성이 강한 규칙적인 흡연자가 64.0%로 나타났다. 이탈리아에서는 9개 교도소의 1,267명을 조사한 결과, 수감자의 77%가 흡연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스코틀랜드에서의 2006년 연간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수감자들의 78%가 흡연자로 나타났는데, 흡연 양상은 2004년의 80%, 2005년의 78%, 2006년의 78%로 큰 변화가 없었다. 이들 흡연자들의 62%는 금연을 희망했지만 절반 이상이 수감생활 중에 흡연량이 늘어났으며, 20%가 흡연량이 줄었고, 26%는 흡연행태에 변화가 없었다고 답하였다. 한편, 여성 수감자들의 흡연율에 대한 연구 결과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호주에서 이뤄진 한 연구(2001년)에서는 여성 수감자의 흡연율이 81% (n=324/402)

로 나타났고, 이는 남성 수감자들의 71%(n=3,980/5,575)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최근에 호주에서 29개 교도소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여성수감자의 83%가 흡연자로 남성수감자의 78%보다 높게 나타났다.

2007년의 Palmer는 여성 수감자들의 건강보고서에서 대다수의 약물중독자들이 흡연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여성들은 의사가 금단 증상에 대한 효과적인 처치를 하더라도 여전히 극심한 불안감과 스트레스 과잉 반응, 충동적인 반응 등을 보이게 되는데 그 심각성이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교도소 직원들의 흡연율에 대한 연구 또한 매우 드문 편이다. 미국 버몬트 주에서 이뤄진 2001년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24%가 흡연자이며, 38%는 비흡연자이고, 역시 38%가 과거흡연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 연구는 전체 응답률이 50%에 머무르는 한계를 안고 있다.

한편 교도소 직원들의 금연정책에 대한 호응도를 조사한 연구에서는 호주의 경우에는 완전금연정책 시행에 대해 직원들의 44%만이 찬성하였고, 흡연자인 직원들의 경우 비흡연자들에 비해 덜 엄격한 금연정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미국

버몬트 주 교도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2001)에서는 교도소의 완전금연정책에 대해 한 번도 흡연경력이 없었던 직원들의 56%가 찬성하였고, 과거 흡연력이 있었던 직원들의 49%가 각각 찬성하였다. 반면 현재 흡연상태인 직원들은 15%만이 찬성하였다.

또한 직원들의 흡연제한에 대해서는 비흡연 직원들의 38%만이 찬성했으며, 현재 흡연자인 직원들의 경우는 불과 3%만이 찬성하였다. 교도소 직원들의 52%가 교도소 건물의 실내 금연정책 및 옥외에서의 지정구역에서의 흡연을 허용하는 부분 금연정책을 지지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현재 흡연자에 해당하는 직원들이 비흡연 직원들에 비해서 흡연 제한 조치에 따른 부정적인 결과들이 보다 심각하고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도시설의 직원들 대다수가 보다 엄격한 금연정책의 시행을 덜 지지하고 있으며, 특히 현재 흡연상태인 직원들이 완전금연정책에 대해 저항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동시에 교도소 금연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흡연자인 직원들의 정책 순응도를 높일 수 있는 별도의 효과적인 중재전략이 요구됨을 보여주고 있다.

2. 교도소 내 수감생활의 특성

교도소의 수감생활은 일반적인 사회생활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는 매우 특수한 환경으로 간주될 필요가 있다. 오랜 기간 동안 교도소의 흡연문제를 연구해 온 Butler T. 는 이에 대해 “흡연행위는 수감생활과는 결코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한 부분으로 이미 오랜 기간 정착되어 온 교도소의 고유한 문화로 간주되어야 한다.” 는 언급을 하고 있다.

수감환경에서의 흡연

수감생활에서 흡연이 차지하는 역할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금연정책 도입에 앞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① 권태로움에 대한 위안

수감생활은 그 자체가 권태로움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상당한 조건들로 채워져 있으며, 흡연행위는 이를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수감자들은 대부분의 수감생활을 감방에 갇혀서 지내게 된다. 격리된 생활에서 느끼는 수감자들의 고립감은 주말이나 공휴일, 명절 등의 기념일 등에서 더욱 커지게 된다. 수감자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는 종종 제한되며, 그 또한 큰 흥미를 느끼기 어려운 것들이다. 여가활동을 위한 시설 또한 제대로 갖춰져 있지 못하며, 그

이용 기회도 매우 제한적이다.

“솔직히 가장 큰 문제거리는 수감생활의 권태로움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왜 주말에 유독 많은 말썽거리가 생기는 지에 대한 이유가 된다. 그나마 감방에 앉아서 한 잔의 커피와 담배 한 개비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이 그나마 이 지겨움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큰 위안거리라고 할 수 있다.”

② 스트레스로부터의 위안

수감생활 그 자체가 상당한 스트레스 요인일 수 밖에 없다. 누구나 사회와 격리된 수감생활을 힘들어 하기 마련이지만, 어쩔 수 없이 수감생활에 따르는 많은 고충을 견뎌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폭력이 난무하는 수감환경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많은 갈등을 감내해야 한다. 때로는 면회를 통해 가족들의 어려운 소식을 전해 듣거나 석방이 좌절되는 과정에서 견디기 힘든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 흡연행위는 이처럼 수감생활에 따르는 급격한 스트레스 반응을 다소나마 유예시켜 주는 효과를 가진다.

③ 집단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강화하는 수단

교도소 내에서의 흡연행위는 아주 흔히 목격할 수 있는 것이다. 누군가와 담배를 나누고 함께 피우는 과정은 한 집단으로서의 소속감을 확인하는 일상적인 수단이 된다.

이는 특히 일상적으로 폭력 등의 잠재적인 위협상황에 놓여있는 수감생활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교도소에서는 금연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다수의 흡연자들과 동떨어져 고립된 생활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쉽게 용납되기 힘들다. 또한 흡연행위는 금연정책을 시행하는 교도소의 관리자들에 대한 수감자들의 집단적인 반발과 저항을 표현하고 공유하는 상징적 수단으로 받아들여지므로 개인적으로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④ 불법적인 약물사용과의 연계

흡연은 수감자들이 다른 불법적인 약물의 중독에 빠져드는 통상적인 경로가 된다. 일단 흡연에 따른 괘감에 계속 집착하게 되면 여타의 약물 사용에 대한 자제력이 급격히 약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⑤ 고비용 구조

흡연행위는 수감생활에서 매우 큰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 된다. 미국의 경우에는 수감자들의 유급으로 일하는 경우, 주급 수당의 절반 이상이 담뱃값으로 지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를 대다수가 별로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다. 여기서 주급 수당으로 벌어들이는 돈은 담배를 구하는 데 쓰이기 마련이다. 그럴 때 마다 이런 생각에 빠져들

게 된다. ‘신이시여, 제가 이번 한 주 꼬박 일해서 돈을 벌어들인 게 결국은 (내 몸을 망쳐서) 당신에게 서둘러 다가서기 위함이라는 것을 당신은 아십니까?’”

3. 담배연기 없는 교도소 정책의 현황

정부기관 가운데 흡연자에 있어서는 마지막 성지와도 같은 곳이었던 교도소 건물에서도 최근 금연정책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그간 교도소는 강도 높은 금연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서구사회에서도 여전히 흡연이 허용되고 있는 몇 안 되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였다. 오늘날 흡연자들도 일정한 형태의 흡연 제한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업장이나 병원에 비해 그동안 정신질환자들의 수감시설이나 교도소 등과 같은 장기간의 수감시설은 금연정책의 도입에 대해 줄곧 저항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또한 지금까지는 교도소 내에서의 흡연행위는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었기에 공중보건 차원에서도 큰 주목거리가 되지 못하였다. 그보다는 약물중독이나 동성애 문제와 성병과 HIV, 자해와 자살사고, 수감자들 간의 폭력 등이 훨씬 주된 관심거리가 되어왔다. 이는 전염성 질환이 수감자들의 단체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공중보건학적 측면에서도 충분히 납득할 만한 상황으로 보

여진다. 그러나 최근 들어 미국, 호주, 영국, 웨일즈 등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교도소에서의 금연정책이 새롭게 시도되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유럽지역에서의 금연정책은 2006년 네덜란드, 벨기에, 핀란드, 스코틀랜드 등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2007년 12월에 유럽지역의 교도소들에 대한 설문조사가 이뤄졌는데, 여기서는 28개 지역 교도소들 가운데 22개 지역에서 금연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답하였다. 독일의 2개 지역에서는 시범적인 금연정책을 펼치고 있는 중이고, 스위스, 모나코, 체코 공화국, 헝가리 등은 금연정책이 이미 시행되고 있고, 모나코는 조만간 정책시행을 준비 중인 것을 확인되었다. 이들 응답국가 및 지역의 70%에 해당하는 19개 국가 및 지역에서는 수감자들이 자신의 감방 내에서만 흡연이 허용되고 있었다. 또한 60%에 해당하는 16개 지역에서는 비흡연 수감자들이 요청할 경우, 비흡연자들만 수감하는 감방으로 옮길 수 있게 하고 있었다. 이들 지역에서는 금연정책이 일반적인 교도소 보건정책의 하나로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2007년 4월과 7월에 영국과 웨일즈에서는 강도 높은 금연정책을 시행하였는데 우선적으로는 비흡연자들끼리만 같은 감방을 사용하게 배정하였다. 비흡연자 수감자들이 흡

연자와 감방을 같이 사용하지 않게 하였으며, 이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감방의 흡연은 금지되었다. 교도소 내의 실내공간은 완전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수감자들이 간접흡연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흡연이 허용되는 감방은 다른 감방들로 직접 통하는 환기장치가 갖춰지지 않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감방내의 흡연은 금지되었다. 흡연자인 수감자는 교도소 건물 외부의 지정된 흡연구역에서만 흡연이 허용되었다. 교도소 내에서 운행되는 차량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흡연이 제한되었다. 젖먹이의 육아가 허용되는 여성수감자 감방과 청소년 감방의 경우는 어떠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완전 금연정책이 적용되었다.

수감자들은 자신의 감방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흡연이 허용되었는데 이는 “수감자들의 감방을 그들의 일시적인 혹은 영구적인 가정(home)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수감자들을 참여하는 교육프로그램이나 각종 교회활동, 교도작업 중의 흡연행위에 대해서는 작업장(workplace)에서의 흡연으로 간주되어 금지되었다. 또한 담배나 라이터 등과 같은 물품의 법정반입이 일체 금지되었다. 수감자들이 교도작업 중에 자신의 감방으로 복귀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옥외의 지정된 구역에서만 흡연이 허용되었다. 이러한 금연정책은 교도소의 직원들에게

도 적용되었는데 직원들도 교도소 건물 내에서는 흡연이 제한되었으며 휴식 중에만 옥외의 지정구역에서 흡연이 허용되었다.

한편 미국의 경우는 교도소에서의 금연정책이 보다 이른 시기에 만들어졌는데 이는 비흡연 직원들과 비흡연 수감자들에 의한 잇따른 법정소송의 결과에 따른 것이었다. 그 대표적인 소송사례가 1993년의 Helling vs McKinney 소송건이다. 미국 대법원은 이 소송건에서 수감자가 동료 수감자가 내뿜는 담배연기에 불가피하게 노출되어 건강상의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에 대해 “잔인하고도 비정상적인 처벌(a cruel and unusual punishment)”로 간주하였고, 이는 미국의 수정헌법 제8조를 위배하는 것으로 판시하였다.

1996년에는 폐기종을 앓고 있는 수감자가 미국 버몬트 주(州)를 상대로 자신이 부당하게 간접흡연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정은 수감자들이 간접흡연에 따른 비합리적인 위험에서 벗어나야 할 헌법적인 기본권을 가지고 있음을 재차 확인하였다. 또한 수감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버몬트 주가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하였다. 이후로 유사한 소송사례에서 수감자들의 잇단 승소와 법원의 행정명령이 거듭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금연정책을 수용하는 교도소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담배연기 없는 교도소 정책은 수감자들의 법정소송에 따른 행정적

인 책임을 벗어나기 위한 교도기관들의 대응조치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서 공중보건차원의 관심이나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Helling vs McKinney (1993)

미국 수정헌법 제 8조(보석금, 벌금 및 형벌)는 수감자에게 과다한 보석금을 요구하거나, 과다한 벌금을 과하거나,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을 과하지 못한다는 내용에 해당한다.

1993년 미국 네바다 주의 수감자인 McKinney는 자신이 수감 중인 교도소장인 Helling을 비롯한 교도소 관리자들을 상대로 자신을 간접흡연의 심각한 위험에 방치함으로써 자신에게 보장된 수정헌법 제8조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당시 McKinney는 하루 5갑 이상의 담배를 피우는 꿀초 흡연자와 같은 감방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현재와 미래의 건강 상태가 감방 내의 자욱한 담배연기에 의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도소의 관리자들이 이러한 위험을 무관심하게 방치해 왔다는 것을 주된 소송 사유로 삼았다.

법정의 연방정부 재판관은 그가 담배연기 없는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침해받은 것이 수정헌법 8조에 명시된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에 해당한다는 것과 그가 감방 내의 담배연기가 자신의 미래건강에 어떤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얻을 수 있었어야 했다고 판시하였다.

이 소송건 이후로 수감생활에서의 간접흡연 피해 소송에서 교도소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한 수감자들의 잇단 승소가 이어진 것이 미국의 교도소 금연정책이 급격히 확산되는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

2002년의 미국교정기관(the American

Correctional Association)에서 시행한 조사에서는 미국의 50개주 가운데 최소 38개 주의 교도소 관할기관이 완전 금연정책이나 부분적인 금연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운 주의 경우는 입 담배를 허용하기도 하고, 플로리다 주에서는 외부의 지정흡연구역을 두기도 하는 등의 차이는 있었다.

2004년 7월 정부 산하의 105개의 교도소에서 18만 명의 수감자에 대해 완전금연에 가까운 엄격한 금연정책이 시행되었다.

2005년 7월부터는 캘리포니아 주의 32개 교도소 내의 16만 명 이상의 수감자들을 비롯하여 교도소 직원, 방문자들에 대해 모든 담배제품의 소유, 판매, 이용을 금지하는 완전금연정책이 시행되었다.

2008년 1월 현재 미국 내의 24개 주에서 교도소 건물 내에서의 완전금연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중 Arkansas, Nebraska and South Carolina 등의 세 개 주에서는 교도소 부지 경계 내에서의 완전금연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4. 교도소 금연정책의 주요 내용

교도소에서의 수감생활에서의 간접흡연

위협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특히 부각된다.

첫째, 교도소 수감자들의 흡연율은 대략적으로 60-80%로 추산된다.

둘째, 금연정책이 효력을 미치지 않는 상황에서의 감방 내의 열악한 환기시설은 간접흡연의 노출수준을 크게 높이게 된다. 예를 들어 미국 버몬트 주의 교도소에서 공기 중의 니코틴 농도 수준을 조사한 결과, 평균 $6 \mu\text{g}/\text{m}^3$ 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감방 내부와 공공실내공간에서 그 수준이 높았다. 이는 간접흡연의 노출허용기준인 $0.75 \mu\text{g}/\text{m}^3$ 에 비해 10배 이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감생활은 수감자들이 상당 시간을 실내에서 생활할 수 밖에 없는 관계로 불가피하게 간접흡연 노출에 시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교도소에서의 금연정책은 수감자 개인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교도관을 포함한 교도소에서의 수감생활을 포괄할 수 있는 다양한 중재 프로그램에 의해 시도되어야 한다.

교도소는 직원들에게는 직장(work-place)에 해당하며, 수감자에게는 가정(home)에 해당한다. 교도소 내에서의 금연정책은 수감자들과 직원들, 부분적으로는 면회객들의 외부사람들에게 모두 적용되어 진다.

이는 부분적인 흡연제한 및 완전한 흡연 제한으로 재차 구분되는데, 전자의 경우는 교도소 내의 특정장소인 지정흡연구역 등에서만 흡연을 허용하는 것이고 후자의 경우는 감방을 포함한 모든 장소에서의 흡연을 제한하는 것이다. 논란의 여지가 많으나 감방은 수감자들의 개인적인 수용공간으로서 간주될 수 있으며, 금연정책의 도입기에는 흡연제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5. 교도소 금연정책의 효과

담배연기 없는 교도소 정책을 도입하는 목적은 비흡연자의 건강보호와 흡연자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주된 효과는 수감자들이나 직원들의 건강상태 향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도소에서의 금연정책이 흡연율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는 드문 편이고, 그 연구방법도 취약한 편이다.

미국 인디아나 주에서는 교도소의 금연정책이 실효성이 약해서 수감자들의 76%가 금연정책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인 흡연상태로 나타났으며 97%가 출감 이후로 재차 담배를 찾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South Dakoda 주에서는 금연정책 실행에도 불구하고 여성수감자의 24%가 여전히

흡연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영국의 15세-18세의 청소년 수감원에서는 수감자와 직원들에 대한 금연정책이 시행된 첫 해에만 직전 년도의 10개월간 화재건수가 27건이었던 것이 단 한 건으로 줄어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관련 연구가 부족한 관계로 교도소의 금연정책의 효과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진다.

6. 담배연기 없는 교도소 정책의 부작용

2005년 7월 1일부로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모든 교도소에서 수감자, 직원, 방문자들에 대해 모든 담배제품의 소유, 판매, 이용을 금지하는 완전금연정책이 시행되었다. 이 조치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의 32개 교도소에 수감된 약 16만 명의 수감자들 중 흡연자로 추정되는 최소 8만 명 이상이 이 날을 기해서 금연을 하도록 요구받게 된 것이다. 이들 수감자들은 본인들의 금연에 대한 준비나 결심 정도와 무관하게, 또한 본인의 흡연 기간이나 하루 흡연량 등의 니코틴 중독 정도와도 무관하게 강제적인 금연정책에 내몰리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는 매우 과감한 주 단위의 정책적 실험이라는 지적과 함께 어리석을 정도로 단순하기 그지없는 정책적 수단

이라는 비난들이 뒤따랐다. 이 시기에 쏟아진 찬반논란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반대 / 우려의 입장)

- 급작스런 금연정책으로 초래될 수 있는 대다수 흡연자들의 불안, 초조감, 충동성/공격성 등의 금단증상과 같은 문제들로 교도소 내 폭력문제나 수감자들과 직원들 간의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
- 오랜 기간 동안 관행적으로 굳어진 수감자들의 흡연문화를 송두리째 바꿔버릴 수 있는 중대한 문화개혁을 감당해 낼 수 있는 관리자들의 준비가 갖춰져 있지 않다.
- 일반인구집단에서도 어느 정도 흡연권이 인정되고 있다고 볼 때, 수감자들에게 보장된 몇 안 되는 사적인 자유의 박탈과 수감자들의 흡연행위에 대한 처벌은 지나치다.
- 담배밀거래와 관련된 새로운 암시장의 성행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미국의 교도소 상황에서는 금연정책이 교도소의 암시장을 활성화시킨 주된 이유로 손꼽히고 있다. 수감자들, 교도소 직원들, 외부 방문자들이 암시장에서의 담배 밀거래로 적발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지역의 한 교도소의 암시장에서는 담배 한 개비가 12,000 원 이상으로 거래되고 있다(2004, USA Today). 심지어 담배관련 제품의 취급이

금지된 교도소에서는 수감자들이 단 한번의 라이터 불에도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우가 여타 지역의 교도소에서도 보고되고 있다.

- 교도소에서의 금연정책은 니코틴에 의존적인 수감자들을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으로 내몰게 하므로 어떠한 치료적 지원 혹은 금연지원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제공되지 않을 경우, 수감자는 교도소 내에서의 암시장을 통해서 담배를 구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
- 버몬트 주 교도소를 비롯한 일부 지역의 경우, 완전금연정책을 시행하였다가 담배밀거래와 관련한 교도소 내 암시장의 성행과 직원들과 수감자들 간의 갈등 증폭 등으로 완전금연정책을 포기하고, 결국 건물 내의 실내공간에서는 흡연을 제한하되 건물외부에서는 흡연을 허용하는 것으로 수정한 전례들이 있다.
- 교도소 내에서의 경제적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 경제적 지원을 얻기 힘든 수감자들의 경우는 담배를 구입하기가 더욱 어려워지며 또한 니코틴 패치 등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흑인계층이나 라틴계층의 저소득층 수감자들은 특히 니코틴 패치를 구하기가 어려운데, 이미 이들 계층은 미국 내의 다른 인종계층에 비

해서도 금연성공이 보다 힘들다는 것이 거듭 확인된 바 있다.

- 전문가 위원회에서는 이미 ‘정책적으로 강제된 금연이 자발적인 금연과는 그 효과에서 큰 차이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 2002년의 연구결과는 정책적인 강제로 금연상태를 유지했던 수감자들의 97%가 출감 후 6개월 이내에 흡연을 다시 시작한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 교도소를 벗어날 경우의 흡연재발 문제이다. 결국 출감 후 지역사회 차원의 지원체계가 뒤따르지 않는 한 교도소 금연정책은 그 한계가 명확하다.

(찬성 입장)

- 2004년 캘리포니아 주 보건성의 연구조사에 의하면 매년 흡연자 1명에 따른 보건 의료비용으로 수감자 1인당 평균 3,500달러 이상이 지출되고 있으며, 교도소의 금연정책을 실행할 경우, 수감자들의 보건 의료비용이 대략 매년 2억 8천만 달러 정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캘리포니아 지역은 미국 내에서도 수감자들의 수가 매우 높은 편인데 여타 주에 비해 교도소의 보건의료부문 비용이 2000년의 5억 6천 6백만 달러에서 2004년의 9억 7천 5백만 달러로 급격히 증가한 바 있다.

문제는 이러한 비용 증가의 주된 요인이 수감자들의 흡연관련 질환의 증가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다.

- 이 조치는 결코 급작스러운 것이 아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32개 교도소 가운데 13 군데에서 완전금연정책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교도소에서의 금연정책은 이제 국가전반의 표준적인 정책으로 정착될 만큼 확산된 상황이다.
- 기존 사례들을 들춰볼 때 교도소의 금연정책 시행 전에는 수감자들의 폭력이나 폭동사태 등에 대한 우려가 많았고 수감자들의 거친 항의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실제 교도소의 금연정책 시행 이후로 그에 따른 수감자들의 반발행위가 많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거듭 확인되고 있다.
- 금연정책 시행에 따른 금단증상 등의 심적 고충은 교도소의 수감환경에서 수감자들이 겪고 있는 여타의 문제들에 비해서는 매우 사소한 문젯거리에 지나지 않는다. 수감자들에게 있어 금연은 선택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는 교도소에서의 수감생활이 가져다주는 가장 큰 혜택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니코틴 중독에서 해방되는 데에는 단지 몇 주일간의 길지 않은 시간만을 필요로 한다. 이후에는 그보다는

훨씬 많은 이득이 따라오게 된다.

7. 교도소의 금연지원프로그램

영국에서는 ‘Acquitted program’이라는 대규모의 금연지원 프로그램이 시범적으로 진행되었는데, 이들 교도소의 수감자들은 단체로 혹은 개인별로 상담을 받으면서 니코틴 패치나 부프로피온 등의 전문의약품을 처방받았다. 2004년 4월부터 2005년 3월 까지 영국 북서부 지방의 16개 교도소에서 진행된 이들 프로그램의 성과는 매우 기대되고 있는데 이들 교도소에서는 니코틴 패치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혹은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4주 금연성공률이 41%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러한 성과는 수감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다각도의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영국과 웨일즈에서의 이러한 금연프로그램의 성과를 외삽해 본다면 1년에 최소한 41,240명의 수감자들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다는 추정이 가능해진다. 물론 이들 시범적인 금연프로그램에 참여한 수감자들의 경우, 금연 동기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편에 해당한다는 선택 편견(selection bias)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편 교도소에서의 금연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정도를 조사한

연구에서는 두 군데의 교도소에서 각각 88%와 34%의 수감자들이 이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그 요구도가 결코 낮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호주에서의 New South Wales에서도 흡연 수감자들에 대한 시범적인 다양한 금연중재프로그램이 시도되었다. 이 연구는 330명의 남성을 수감하고 있는 극도의 보안을 요하는 교도소에서 진행되었다. 이 교도소의 금연프로그램은 두 개의 간략한 인지 행동요법과 니코틴 대체요법, 부프로피온, 자조요법 등으로 구성되었는데 30명의 수감자들이 참여하였다. 6개월 경과시점에서의 지속적인 금연유지율은 22%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저자들은 교도소 수감생활에서의 금연프로그램의 성공가능성과 함께 수감자들 대상의 금연프로그램 실행을 위해서는 교도소 환경 및 수감생활의 특성과 관련된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분석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요약하자면 금연을 희망하는 수감자들에 대해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에 부합하는 금연프로그램이 아직 제대로 제공되거나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8. 결론 및 권고사항

결론

1. 교도소에서의 금연정책은 매우 새로운 주목거리이다. 아직까지는 손에 꼽을 정도의 일부 국가들만이 금연정책이나 금연프로그램 등의 체계적인 교도소 금연정책을 도입한 상태이다.

2. 교도소의 보건정책은 감염성 질환이나 불법약물 중독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긴 하지만 수감자들의 대다수가 흡연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이다. 수감자들의 높은 흡연율은 수감생활의 문화적 특성에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보다 포괄적인 금연정책의 기획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다.

3. 수감생활 중의 흡연문제를 다룬 연구 과제가 매우 드물다.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수감생활에서의 간접흡연 문제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4. 단지 몇 건의 제한적인 연구결과이긴 하지만 교도소 직원들의 흡연율이 일반 인구집단에 비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교도소 금연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흡연자인 직원들의 정책 순응도를 높일 수 있는 별도의 효과적인 중재전략이 요구

된다.

권고사항

1. 교도소는 공공장소이며, 수감자들과 교도관들에게는 공동의 작업장에 해당하며, 수감자들에게는 가정에 해당하기도 한다.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교도소의 모든 금연정책은 이 세 가지 영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2. 교도소에서의 간접흡연 노출상황에 대해서 각 국의 보건당국이나 교도시설 보건정책관계자들이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영국, 웨일즈, 스코틀랜드의 경우처럼 교도소 체계에서의 금연정책실행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마련되고, 실행되며, 평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각 국 정부는 금연지원프로그램의 실행 이외에도 교도소의 특성을 제대로 고려한 금연정책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여야 한다. 수감자들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흡연 행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는 교도소 금연정책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4. 교도소에서의 금연정책 실행방안과 금연정책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5. 비흡연 수감자들이 수감생활 중에 흡연을 시작하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수감자들과 교도관들의 금연을 지원할 수 있는 상담프로그램, 금연보조제 등의 무상지급 등과 같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6. 비흡연자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지만, 흡연자인 수감자들 또한 교도소 내의 별도의 지정된 구역 내

의 감방 안에서 흡연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되어야 한다. 비흡연자들은 비흡연자들끼리만 감방을 함께 사용해야만 한다. 흡연이 허용되는 감방에서는 교도소 내의 다른 감방으로 통하는 환기장치가 갖춰져서는 안 된다. 교도소 내에서 공동으로 이용되는 실내 공간 역시도 완전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⑥

참고문헌

- Zoroya G. Smoking bans spread to prisons. USA Today, 2004 Jul 21.
- Cropsky Kl, Kristeller JL. The effects of a prison smoking ban on smoking behavior and withdrawal symptoms. Addict Behav 2004;29:425-31.
- Butler T. Preliminary findings of the NSW inmate health survey. Sydney: NSW Corrections Health Service 1997.
- Butler T., R.Richmond, J. Belcher, K.Wilhelm and A.Wodak (2007). Should smoking be banned in prisons? Tob Control 16(5):291-3.
- Helling v Mckinney, 112S. Ct2475, 1993.
- Carpenter, Hughs, Solomon and Powell (2001). Smoking in correctional facilities : a survey of employees. Tob Control 10(1):38-42.
- Marquez J. Tobacco black market is smoking hot in California prisons, Associated Press, 2007, Feb 20.
- Richmond R, Butler T. Tobacco in prisons: a focus group study. Tobacco Control 2009;18:176-182.
- Richmond R, Butler T. (2006). Promoting smoking cessation among prisoners : feasibility of a multi-component intervention. Aust N Z J Public Health 30(5):474-8.
- Department of Health and HM Prison Service (2007). Acquitted - Best practice guidance for developing smoking cessation services in prisons. London.
- Lincoln, T.,R.S.Chavez and E. Langmore-Avila (2005). US experience of smoke-free prisons. Brmj 331(7530):1473.